

NGO SERIES #15



국가인권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요 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하였다. 출범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출범 이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그것을 압도하였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의심하고, ‘인권을 위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 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의 적’으로 비난받게 된 이유는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쌓아온 업보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인권’이라는 말은 이전에 ‘민주화’가 누렸던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인권’은 그 자체가 도덕적 우위를 점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판 없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세력들은 ‘인권’을 앞세워 이념 편향적인 주장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 편향적인 주장과 ‘인권’이 별 상관이 없거나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인권만을 앞세워 온 ‘인권근본주의’와 인권을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로 사용한 ‘인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민주화’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집단의 이익을 포장하는 언어로 전락하였다.

‘인권’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회적 체면을 상실한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구현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워 출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설립 목적을 훼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 거침 없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종교적 병역 기피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국가기관으로서 품위를 상실하고 비제도권의 운동권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을 해온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행적이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불러온 것은 당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해 온 편향적인 인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고안을 검토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1월 9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비판

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인권’ 논의에서 근본 문서 구실을 하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과 그것의 철학적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주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수행한 과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권’은 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개념임을 밝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할 권리로서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하고 증진하는 이념과 방법은 바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임을 보여주려 한다.

목차

요 약	2
I.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권’	5
II. 세계인권선언에 관하여	7
1.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7
2. 세계인권선언의 구성 내용	8
3. 인권의 보편성	12
4. 세계인권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
III. 국가인권위원회	2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22
2.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22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25
IV.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0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하여	30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내용	33
3. 권고안에 대한 평가	42
4. 비판적 검토	50
V.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68
참고문헌	71

1.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권’

어떤 말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 그 말 자체가 윤리적 우월성을 보장한다. 윤리적으로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처럼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 가운데 하나가 ‘인권’이다. 인권의 영어 표현인 ‘Human Right’ 속에는 이미 ‘옳음, right’이라는 윤리적 의미가 들어 있다.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제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인권’을 표방하는 주장들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인권을 둘러싸고 수많은 철학적 논쟁이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인권 개념의 의미, 정당화의 근거, 정당화의 논리는 무엇이며 인권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 인권과 다른 가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인권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역사적인 개념이다. 인권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는 관점은 인권이 역사적 개념임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확고부동한 신성한 제1원리로 인정하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울 수는 없다. 인권은 사회 문화적, 정치·경제적 관계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인권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념적 편향을 지닌 주장들도 ‘인권’을 표방하면서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자신의 주장은 인권을 신장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논파하려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로 많아지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가 모든 가치들 가운데 으뜸 가치 역할을 하면서 언어적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듯이 민주화 이후 ‘인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기성 제도에 대한 ‘인권’을 명분으로 한 비판이 모두 타당한 것도 아니고 실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경우 자신들의 이념적인 입장을 옹호하고, 현존의 제도를 뒤집기 위해 인권을 ‘수사(修辭)’로 동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명분으로 기존의 제도를 타파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제도 타파와 인권 수호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들이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언어적 권력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인권이 왜 중요한지, 인권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인권법이 실제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많지 않다. 나아가 인권을 신장하거나 침해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없다.

다만 인권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제도나 법률이 인권을 신장할 것이라는 독단적 확신에 기초하여 그 제도와 법률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 제도와 법률이 다른 사람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인권을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없다. 이런 ‘인권 근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권고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권이나 인권법이 모든 인류의 보편성을 반영하거나 국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념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항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원래 목적이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는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와 하는 일의 정당성을 국제인권선언에서 찾는다. 인권 관련 국제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해 온 일들을 평가해 보자.

II. 세계인권선언에 관하여

1.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인권법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¹⁾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맺은 원대한 약속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나치의 잔악 행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전쟁의 참화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라는 전문에는 나치의 잔악 행위에 대한 경계가 잘 나타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였다. 제2조는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한 인권위원회는 UN회원국들의 종교적·철학적·이념적 다양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의 철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치주의에 대한 반대는 로크의 정치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연권이라는 개념 대신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기반을 자연에 둬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였다. 곧 근본적인 가치나 신념에 대해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인권선언에 대한 합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지만 철학적으로는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론적 한계를 안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문화, 정치제도, 지리적 위치, 경제적 상황을 초월한 보편적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반대 논의는 종식되지 않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과 같은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권리의 충족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부과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할 목표들로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은 많은 인

1) 세계인권선언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선언이다. 선언(Declaration)은 입안자들(정부의 법적 대표들)이 주어진 목적과 목표와 원칙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선언의 내용은 도덕적 의무를 구성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협약(Convention)은 조약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국가 간의 협정이다. 협약은 체결하기로 동의한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권고(Recommendation)는 의사결정기구(예를 들면 유네스코 총회)가 특정한 행동 노선을 촉구할 목적으로 만드는 문서이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결의(Resolution)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기구(예를 들면 유엔 총회)가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하는 문서로 이 결의를 채택한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의정서(Protocol)는 ① 조약 또는 협약의 한 형태 ② 조약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선택적 또는 의무적인 추가 문서이다.

권 관련 국제법들이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200여 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법률문서들이 존재한다. 그 중 65개의 문서가 자기정당성의 근거를 세계인권선언에서 찾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서구 편향적이라거나, 의무보다는 권리를, 집단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것은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우려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인권 조항은 일반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로 구분될 수 있다.²⁾

2. 세계인권선언의 구성 내용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세계인권선언을 구성하고 있는 30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제1조부터 제21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1조는 ‘인간 존중, 평등, 형제애’의 선언이다. 제1조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각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조는 ‘평등의 원칙’의 선언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인주의, 외국인 혐오증, 성차별주의는 인권의 적들이다. 이런 적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모두 혐오하는 태도로 때때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을 파괴하였다.

제3조는 ‘생명권’의 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근본 바탕이자 초석이다. 생명권의 목적은 인간의 물리적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제3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갖고

2) 유네스코, 『모든 인간은...』의 분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단체들은 강력하게 비난받는다.

제4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노동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노예제도와 노예 상태, 노예매매를 금지한다. 노예제도는 인간을 하나의 도구나 타인의 의지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취급함으로써 이 제도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노예제도는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 따라서 국가는 노예제도나 강제노동을 시행하지 않을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는 ‘고문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하고 있다. 사람의 육체적·정신적·도덕적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고문금지는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문은 세계적으로 널리 비난받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6조는 ‘법 앞에 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7조는 ‘법 앞의 평등’,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2조는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조항이다. 곧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사이의 균형의 문제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서구의 권리의 역사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이 국가에 대항하여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지를 중요시하였을 뿐,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국가가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약하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3조, 제14조는 ‘이주의 자유와 망명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망명할 권리에 관한 조항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만행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심각한 인권 침해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15조는 ‘국적에 대한 권리’이고 제16조는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이룰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제17조는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권리 개념은 재산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운동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 영향으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약한 형태의 재산권이다.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권리는 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재산은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의 한 가지 수단이다. 이 권리는 국가의 자의적 조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어떤 종교가 인권조항 중 일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제18조와 다른 조항에 나열된 권리들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제19조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7조와 충돌할 수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에는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혐오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제20조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21조는 ‘공무에 참여할 자유’에 대한 선언이다. 이 권리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2) 경제적·사회적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이전의 권리선언들에 빠져있었던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전의 다른 문서에도 그 권리들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는 ILO 협약에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UN헌장 제55조에도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제55조는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촉진하며,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문화 및 교육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당시 파시즘의 부활을 막고 UN의 목적을 촉진시키는 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에도 포함되었다.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 권리 전통과 사회주의 권리 전통이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많은 문제와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제22조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였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적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

3) 프리먼, 2005, p.62.

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제23조의 ‘일할 권리’, 제23조와 제24조의 ‘정당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곧 ‘건강과 안전, 휴식,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정기적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사회에서 이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25조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많은 비판적인 관점들이 존재하고 합의의 강도가 높지 못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이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5조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적으로 제22조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3) 문화적 권리

제26조에서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나아가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7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제19조가 선언한 권리를 문화의 권리로 분류하기도 한다.

(4) 발전에 관한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로 분류된 제22조를 발전에 관한 권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 틀을 제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인권의 보편성

(1) 인권의 역사적 기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권 개념에는 역사적 기원이 있다. 그러나 인권 개념의 기원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인권 개념의 역사를 1945년 UN의 설립 이후로 잡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구약으로 거슬러 가기도 한다. 어떤 학자는 전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인권 개념의 유래를 찾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서구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인권 개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학설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인권 개념이 인류의 새로운 관심사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한 이래 인권은 세계적으로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전에는 서구적 개념으로만 여겨지며 공리주의와 실증주의의 공격으로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인권개념이 전 지구적 개념으로 화려하게 되살아난 것이다.⁴⁾ 인권 개념이 부활하게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잔학행위였다.

UN헌장 전문에서는 UN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조에서는 UN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55조는 UN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계기로 인권개념의 보편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인권은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타당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권리를 충족시켜 주거나 최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4) 프리먼, 2005, p.53.

‘인권의 보편성’은 ‘보편성’의 다양한 의미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인권은 보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인권의 개념은 동일한 내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편성’을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존재했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이 ‘신’, ‘자연’, ‘이성’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인권의 정당화와 관련을 맺을 수도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학설들은 인권의 근원이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2) 인권의 정당화

철학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은 자연권의 보편성에서 시작되었다. 인권 개념의 시초가 된 것은 17세기 로크가 제시한 고전적 ‘자연권’ 이론이다. 로크는 모든 인간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는 정부나 법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취약하다. 자연권 개념에서 도출된 인권 개념이 자연권 개념의 토대가 무너지면서 함께 그 토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UN 인권선언도 확고한 철학적 토대 없이 선언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관련하여 자크 마리탱은 인권 개념의 정당성을 밝힐 필요는 있으나, 그 정당성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근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전문은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할 뿐이다.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인권 이론이 윤리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인권 개념의 시원이었던 자연권 이론은 확고한 토대 위에서 출발하였다. 자연권 이론을 이론적으로 확립한 로크는 자연권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았다. 그 당시 서구에서는 신을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크는 신에 호소하여 인권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 때 서구에서 신은 윤리적 정당성의 원천이었다. 지극히 선한 신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 지배적인 세계관 곧 신에게서 나온 것은 정당하다는 세계관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자연권 이론의 쇠퇴

18세기가 지나면서 자연권 개념이 점차 탈종교화되자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연권의 원천으로서 신이 정당성을 상실하자 합리주의자들은 도덕과 정치에 필요한 원칙들이 신이 아닌 이성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철학자들은 권리 개념이 신이 아니라 이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확고한 정당화의 토대로 인정해야만 한다. 만일 이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성에 근거한 이론은 이성의 확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

이성에 근거한 자연권 개념은 버크, 벤담, 마르크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성에 호소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자연권 개념을 부정하였다. 에드먼드 버크는 생명, 자유, 양심, 노동생산물, 재산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관한 자연권을 인정하였으나, 그는 자연권 개념은 긍정적으로 보아도 쓸데없는 형이상학적 추상 개념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사회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권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라고 보았다. 버크는 인간의 권리가 국가들의 고유한 전통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공리주의는 현대 인권 이론의 근거가 된 자연권은 비과학적이고 사회 질서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벤담은 “자연권은 단순한 헛소리다.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란 수사학적 헛소리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연적 인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부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인권이 아니라 공동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복지의 극대화 와 같은 공리성의 원칙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자연권론자들이 도덕 개념이나 법률 개념이 갖고 있는 사회성의 권리 개념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였다. 마르크스는 자연권론자의 개념이 착취와 탄압적인 사회구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자연권에 대한 명제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권 이론에서는 자연권은 ‘이성’에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인간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자연권 사이에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맥도널드가 주장하였듯이 자연권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도 아니고 자명하게 참인 전제로부터 연역된 것도 아니다. 곧 자연권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권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는 인권이 인간 선택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프리먼은 인권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⁵⁾

i) 인권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따라서 ‘자연스럽지도’ 않고 ‘자명하지도’ 않다. 도덕적으로 강제적일 뿐이다. 그것도 도덕적 강제성과 정당성을 가진 주장에 바탕을 둔 경우에 한하여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은 옳다. 따라서 인권 이론은 좋은 사회를 위한 이론을 뒤따라야 하며, 그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iii)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무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iv) 좋은 사회라는 개념도 각 사회마다 다르며, 거기서 나오는 권리의 개념도 모두 다르다. 보편적인 인권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v) 국제인권법은 정치권력과 현실적인 동의에 따라 나온 산물일 뿐 그에 대한 도덕적 합의도 충분치 않다. 진지하게 이론적 정당성을 밝힌 적도 없다. 일반적인 원칙에 말로만 동의하면서 이 원칙들의 의미와 정책집행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인권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은 힘든 과제이다.

(4) 자연권과 정부의 역할

정부의 일차적 의무는 이러한 자연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로크는 국가의 본래 기능을 시민의 인권 보호로 규정하였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의 확보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국가 개입으로 개인들 사이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 시민의 권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정당한 역할에 대한 로크의 이론은 그의 사회계약설에서 나온 것이다. 로크는 국가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 상태는 실제 역사의 특정 단계에 존재했던 상태는 아니다. 국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가정한 상태이다. 자연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묘사된 홉스의 자연 상태와 달리 로크의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를 구속하고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법을 갖는다. 이 법이 곧 이성이며 이 이성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누구도 남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범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⁶⁾

5) 프리먼, 2005, p.91.

인간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지 말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권리가 아니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만든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유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최소한 타인을 위해 충분하고 똑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노동을 한 사람에게 노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귀속된다. 로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하고 똑같이 좋은 것들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노동은 재산을 산출한다고 말한다. 이 조건은 대단히 평등한 재화의 분배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거의 동일한 재산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원시 농경사회에서 재산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이상의 과일을 보관할 수는 없다. 과일은 곧 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환 매체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가 가진 상할 수 있는 물건을 상하지 않는 것과 교환하여 소유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일 화폐가 도입된다면 자연 상태의 평등은 무너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거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시장에서 교환이나 행운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평등을 용인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노력,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도덕이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로크에 있어서 재산권은 소극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갖지만 타인에게 재산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만든다. 재산권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로크에 있어서 자연권으로서 재산권과 그것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국가는 복지의 제공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한다.

로크의 자연권 개념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현대 인권 개념의 원천이 되었다. 로크의 자연권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재산권이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노동 그리고 노동에 따른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사적소유권의 근거는 노동이다. 그의 재산권 이론이 부의 불

6) J.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1690, 2장 6절.

평등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후 자유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로크의 사상은 미국독립선언(1776년)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신에 의하여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도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 형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 사람은 그것을 폐지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의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회는 프랑스 헌법의 기초가 될 원칙을 정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을 선포하였다. 이 권리선언에 따르면 모든 정치 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연권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법 앞에서의 평등, 자의적으로 체포되지 않을 자유, 무죄추정, 표현과 종교의 자유,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유, 재산권 등을 자연권으로 확인하였다.⁷⁾

(5) 분배적 정의에 대하여

분배 문제는 시장의 자동적 작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분배적 정의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없다. 시장의 작동에 대한 간섭은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비효율성을 낳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좌절시킨다.

시장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자연권을 실현시켜 준다.⁸⁾

i)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재산의 자유를 보장한다.

ii)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고용될 수 있는 능력과 일치하는 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

iii) 이것은 발전에의 가능성을 고양시켜 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일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iv)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고양시킨다. 경쟁적 시장은 경제력과 정치력을 분리시키고,

7) 프리먼, 2005, p.44.

8) 시몬 보이 외, p88, p219.

경제력을 탈집중화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국가가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로크의 이론은 세계인권선언,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간의 적극적인 권리 실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현대 복지국가론은 자유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로크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로크는 국가는 개인들의 기본적 필요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 필요는 생존이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필요이다.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하한선’,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필요의 충족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다. 최저 생활수준에의 권리는 재산권에 우선한다.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산자들의 생산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이 일하겠다는 동기 유인을 억압하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기본적 욕구 충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의 보장까지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의 보장은 최저 생활수준과 달리 심리학적·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끌어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목적의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민주주의적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이 성취된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간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민주적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행복 또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택, 교육, 사회보장, 의료보험, 실업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사회가 할 수는 없다. 사회가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비실제적이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시장 시스템을 유린할 뿐 아니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동기 유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실제적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2, 25, 26조에서 사회적·경제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도널리가 지적하였듯이 세계인권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⁹⁾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복지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때때로 정부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복지국가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지

9) 프리먼, 2005, p.65.

금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간단한 입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달리 사회적·경제적 권리는 풍부한 국가 자원이 필요하다.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보호는 정부가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지만 일할 권리, 사회보장예의 권리는 경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권리와 같은 적극적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해야만 한다. 정부가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만큼의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다. 사적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 UN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어 법의 개정을 정부에 권고하려는 독단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인권이라는 윤리적 개념을 선점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직결된다. 세계인권선언의 승고한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이라는 말의 도덕적 권위를 한층 높여준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로 시작되는 세계인권선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도덕률로 통용되고 있다.

4. 세계인권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선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받들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설픈 철학으로 만든 꼴사나운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한다. 이러한 평가는 이미 순탄치 않았던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초안은 캐나다의 법학자 존 험프리(John Humphrey)가 여러 국가의 헌법을 비교 연구하여 작성하였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초안을 놓고 약 2년간 8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정한 뒤에 거의 만장일치로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통과된 최종안은 UN총회의 사회, 인도 및 문화적 사안에 관한 제3위원회로 넘어가 1948년 9월부터 12월까지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치며 검토되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투표만 해도 1,233회에 이른다. 최종적으로 제3위원회에서 이 선언은 찬성 21, 반대 0, 기권 7로 통과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다시 UN 총회로 넘어와 1948년 12월 10일 48개국 찬성, 8개국 기권에 반대표 없이 채택되었다.¹⁰⁾

이러한 과정은 “인권선언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각 조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정치적 타협도 개입하였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이론적인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 가운데 테러나 대량학살, 집단강간 또는 ‘인종청소’, 국가에 의한 학살과 같은 지극히 잔인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사건이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세계인권선언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제18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선언한다.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주장이 우선인가.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인가. 제1조가 다른 모든 조항보다 우선한다면 이 조항을 부정하는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집단은 개종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적 믿음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특정 종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종은 용서할 수 없다.”는 법률이 아직도 통용되는 국가가 있다. 무슬림이 전인구의 약 99%를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은 개종을 배교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한다. 이슬람 성법(聖法)인 샤리아에 근거한 아프가니스탄 헌법은 무슬림의 배교 행위에 대해 사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남성이 처음으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 그는 16년 전 이슬람교를 버리고 개종했다가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는 명백하게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헌법은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10) 프리먼, 2005, p.56.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한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와 명백하게 상치된다. 이런 상치의 불씨는 이미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정할 권리에 반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회교국의 문화적 근본원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의 원칙을 관철할 수 없게 되자 총회의 최종 투표에서 기권을 함으로써 이 조항에 저항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에 상처를 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종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인권이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III.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의거해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¹¹⁾에 근거하여 인권¹²⁾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기관이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일정 권한을 가지고 일정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거나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 신장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만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사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월 9일 확정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의 경우 2007~2011년 사이의 국가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진보 진영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률이 출범 직후 80%에서 최근에는 37%대로 떨어지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인권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많은 권고를 해왔다. 이러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의식하여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념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인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란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권고 내용이 보편성이 결여된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반인권적인 세력이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¹³⁾

1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

13) 이명재, 2005, “국가인권위 권고, 성찰과 공론의 장 마련”, 『인권』 2005년 5월호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 이라크전에 대한 의견 표명

2003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비춰 이라크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결정한 것을 같은 국가 기관이 뒤집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파병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관인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앞서 이러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기관이 아니라 민간 인권 기구라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여론도 찬반으로 갈려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국가가 맡아야 할 여론의 조정 기능이나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계속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2)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17일 NEIS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표명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6개 시·도 교육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집적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교에서 수집 작성된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NEIS의 27개 개발 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간과되기 쉬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으며 교육부는 이를 일부 수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 24일 “국가보안법은 그 시작과 운용과정에서 솔하게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이다”라는 판단 아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1948년 법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을 빚었고 법 운용과정에서도 반민주성과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 때문에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러 번 우리 정부에 그 폐지를 권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의 연구와 숙고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소지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처리는 폐지 법률안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와 사람들도 많다.

(4) 일기검사 관행 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7일 초등학교의 일기 쓰기 교육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강제적인 검사를 통해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게 돼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 후 거센 찬반 격론이 일어났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결국 이를 수용하였다.

(5)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14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 법안에 대해 “보호의 목적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불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근로 조건은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그 의견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의 ‘개입’ 자체에 대한 비판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근로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국회

에서 전개된 노사정 대화에 방향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아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 호주제 폐지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3월 11일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호주제는 인권침해적인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호주제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 가족을 호주에게 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호주제를 놓고 찬반론이 격렬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호주제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7) 부안 핵폐기장 건설 추진 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11월 9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원자력발전소에 견학시키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강제적으로 실시해 지역민과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권고한 것이다. 이는 국책사업을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일반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크게 엇갈린다.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명재는 출범 3년 6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권고안이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킨 파장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름의 ‘권위’를 갖게 됐다면, 그건 우

리 사회 인권지수의 상승과 도덕적 역량의 확장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차분히 되돌아보면 국가인권위의 권고 하나하나가 모두 결국 우리 사회 사람의 삶과 가치에 대해 성찰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 한 것들이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마냥 편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음은 그동안 익숙하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이다. 우리 삶과 문화 속에 철옹성처럼 견고한 고정관념에 대한 거센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령 논란이 되더라도 그건 소모적인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전진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전조등’ 구실을 한 것이 아닐까.”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인권 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인권위의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인권위원들은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인권단체의 의견과 경험에 귀 기울여 자신들의 빈약한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쇄신해야 한다.” 이들은 인권위원들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질책을 통해 인권위의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를 요청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비판은 인권위의 그동안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구현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배반하여 왔다는 비판도 있다.¹⁵⁾ 이러한 비판은 “국가정체성을 흔들어난 국가인권위 4년”, “국가인권위,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나”, “인권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는가”와 같은 사실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¹⁶⁾ 인권위가 국가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정부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는 ‘인권’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지나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 신문의 사실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합의를 거친 건전한 상식은 물론, 최고 사법 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초헌법기관인 듯 행세해왔다. 우리는 그런 독선과 월권이 인권위의 편향된 인적 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최고 결정기관인 전원위원회나 실무조직인 사무처는 사실상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하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인권위가 불법과 폭력의 시위자나 양심이라는 당찬 명분 뒤에 숨은 병역 기피자의 ‘인권’은 보면서 북

14) 강경근(2006), 6쪽 참고.

15) 강경근(2006), 6쪽 참고.

16) 문화일보 2006년 1월 10일, 1월 18일, 3월 28일 사설제목이다.

한 주민의 인권이나 자유기업주의는 왜 관심 밖이냐는 질책을 받아온 것도 이같은 인적 구성의 오류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듯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인권위로는 설립 취지가 점점 더 무색해질 것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로 재편되어야 한다.”¹⁷⁾

“인권위는 2001년 11월 출범 후 4년여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벗어난 일탈을 거듭해왔다.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종교적 병역거부를 지지·옹호하면서 국가정체성을 혼든 것도 그렇고, 쟁의행위 직권중재제도 폐지, 집회·시위 규제 철폐 권고처럼 균형감각을 잃은 처신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1·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우려하고 나섰을 것인가. 인권위는 내부비판에 까지 이른 오류를 직시하고 그 고언(苦言)을 환골탈태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¹⁸⁾

이 사실의 핵심은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결핍된 민주주의의 과잉이 빚은 결과이다. 더구나 인권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권위는 준사법기구인 우리와 달리 대부분 자문과 연구가 주요 기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는 1년에 200억 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얼마 뒤 다른 일간지 사설도¹⁹⁾ 자유주의연대가 3월 27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실시한 토론회를 평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에서 분리해서 재단법인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이 사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받아온 부정적인 비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자유주의연대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인권위의 ‘헌법질서 무시병(病)’을 우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무시한 채 보안법을 없애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라고 권고해 헌법과 법질서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이 거론한 인권위의 또 다른 병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병’이다. “인권위가 날선 쟁점이었던 이라크전 파병에 반 대해 결과적으로 특정세력의 편을 드는 바람에 국가적 갈등과 논쟁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월권병(越權病)’도 거론됐다. 한 토론자는 “인권위가 지난해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은 자신 말고 다른 국가기관은 인권침해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이러니 다른 정부기관들이 인권위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려

17) 문화일보 사설, 2006년 1월 18일

18) 문화일보 사설, 2006년 2월 1일

19) 조선일보 사설, 2006년 1월 29일.

할 리가 없다. 지난 4년간 다른 기관이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것도 인권위의 이런 ‘월권병’ ‘헌법무시병’ ‘갈등증폭병’의 합병증(合併症)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북한 눈치보기병’과 ‘정치적 편향성’도 빠지지 않았다. 인권위가 “자기가 필요 하면 유엔 결의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결의를 모두 외면하고 전세계 언론이 ‘악법(惡法)’으로 평가하는 신문법에 침묵하는 건(정권 편을 드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식의 인권위의 사이비(似而非) 인권 활동에 대한 비판은 “어떤 국민도 인권위에 초(超)헌법적 권한을 준 일이 없다(인권위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한). 현재와 대법원이 지금 훗날 청산대상이 될 ‘인권 탄압 과거사(過去事)’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냐”는 한 토론자의 발언 내용에 압축돼 있다.

인권위가 국민 세금을 한해에 200여억 원이나 갖다 쓰면서 균형감각을 잃은 무책임한 결정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선 인권위를 국가기관에서 떼어내 재단법인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나아가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인권위원회는 해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구성원

이름	직위	추천 (임·지명)	
조영황	위원장	대통령	변호사,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최영애	상임위원	열린우리당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호준	상임위원	한나라당	언론인, 장준하기념사업협회 운영위원
정강자	상임위원	대통령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만흠	비상임위원	민주당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자문위원
나천수	비상임위원	대법원장	변호사, 서울대 재임용 탈락 교수 변호인
이해학	비상임위원	대통령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정인섭	비상임위원	대법원장	서울대 법대교수
최금숙	비상임위원	대법원장	이화여대 법대교수
신혜수	비상임위원	한나라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원형은	비상임위원	대통령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2001년 출범 당시부터 인권위는 ‘진보적’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위원(위원장 1명, 상임 3명, 비상임 7명)들의 이념적 성향 때문이다. 전원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4명, 국회 추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인 조영황 변호사는 1988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 권인숙씨 측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권위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IV.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은 한 나라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본정책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권고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추진의 배경에는 국제적 요구와 국내적 요구가 있었다. 국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권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국제적 약속의 배경을 살펴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 자유권 규약)’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1년 파리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이 발표되었으며,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들이 되었다. 이어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대회에서는 178개국이 참가하여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용어도 이 대회에서 참가국들은 각 국가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이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전체적인 인권 상황을 보호,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만든 용어이다. 따라서 이들은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을 채택, 각 국가가 자신들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환경과 실정을 반영하여 인권 관련 여러 정책들을 포괄적이고 조화롭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²¹⁾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였으며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은 각 나라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2002년 4월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2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작성한 『인권NAP 안내서 Handbook on National Rights Plans of Action』을 소개받고, 2003년에 국내에서 출간되어 인권NAP 작성을 위한 지침이 되었다.

21) 2005년 8월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20여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해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의 “세계인권대회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매진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존중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6대인권협약 등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 기준이다. 물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직접적인 근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이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권고안을 수립하였다. UN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준비 단계, 개발 단계, 이행 단계,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로 구분하였다.

준비 단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정부에 권고할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초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국가기관 간 협의를 하고, 인권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요 사안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와 함께 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NAP추진기획단, 전문가 자문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NAP실무팀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내부 조직인 NAP실무팀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관련 쟁점 정리 및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권고안 초안이 완성되어 각 분야별로 인권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부문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거쳐 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 통보하였다.

다음 개발 단계에서는 정부 측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인권단체들이 관련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 단계 및 이후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

이행 단계에서는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하에서 각 관련 기관이 실행 의지를 구체화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세워 각 해당 국가기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계획에 따른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모니터링 단계는 이행 단계와 함께 진행되는 단계로서 계획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계획의 목표, 활동 조정과정 등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규정된 목표의 성취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계획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행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계획의 성취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인권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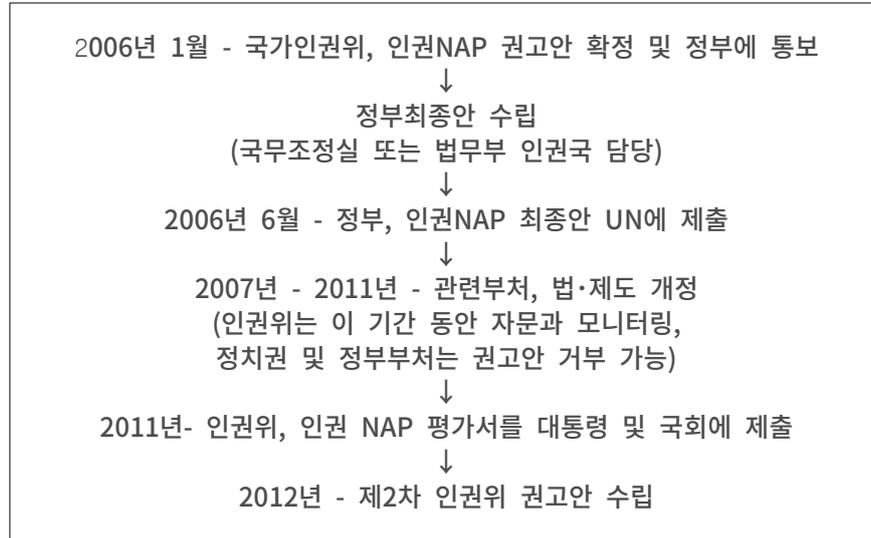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NAP 주요 추진과정 및 일정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안 작성 주관기관으로 선정됨(2003. 10)
-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실무팀 구성(2004. 1)
-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영역별 기초현황조사 총 26건 시행(2004 ~ 2005)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근거규정 마련(2004. 3)
- ▶영역별 쟁점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인권단체 의견 수렴(2004. 6)
-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추진기획단 운영(2004. 2 ~ 2005. 5)
- ▶인권단체들과의 인권NAP 권고안 관련 주요 정책과제 간담회(2005. 3)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에서의 인권NAP 개요 및 인권NAP 권고안 구성 논의(2005. 6. 23 ~ 6. 24)
- ▶인권NAP 권고안 초안 작성(2005. 7)
- ▶서면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인권단체의 의견 수렴(2005. 8 ~ 9)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2005. 9 ~)
- ▶인권위원 워크숍(2005. 9 ~ 2005. 12)
- ▶전원위원회 심의·의결(2005. 11 ~ 2006. 1)
- ▶정부에 통보(2006. 1)

이렇게 만들어져 정부에 통보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로드맵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인권위 로드맵의 향후 추진 과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내용

2006년 1월 권고안은 3년 6개월의 작업 끝에 완성하여 발표되었다. 이 권고안은 A4 125 쪽 분량으로 3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권고안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인권 관련 정책·연구, 조사·구제, 교육·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인권개선 청사진 제시
- 인권 보호 및 정진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권고안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인권 청사진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청사진 제시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UN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국제·국내적 법규체제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방향,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인권 교육 수행 방안, 국제적 활동 및 시민 사회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는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 문화예술 향유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사람 개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참정권, 청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국가인권기구 활성화 및 강화 계획, 인권교육 수행 방안,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이들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 확립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UN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 국내적 법규체계 정비 방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방안,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방안, 인권교육 수행 방안, 국제적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권고안이 중점을 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였다. 권고안의 2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부분은 11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집중해야 할 분야 가운데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여성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당사자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 분야에 한센인, HIV/에이즈 감염인 등 병력자의 인권, 성적 소수자 및 시설 생활인 인권 등을 포함시켰다. 2, 3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서론

1-2.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

1-4.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1-5.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1-6. 장애인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2. 비정규직 노동자

2-1. 서론

2-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2-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2-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인정
- 동일가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및 근로조건의 동일한 처우 보장
-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3. 이주 노동자·난민

3-1. 서론

3-2.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3-3.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 보장

3-4. 이주 여성의 인권보장

3-5. 난민의 인권 보장

- 사업장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규정완화
-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4. 여성

4-1. 서론

4-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향 마련

4-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4-4. 인권 취약여성의 권리증진

5. 아동·청소년

5-1. 서론

5-2.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5-3.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5-4. 보육·교육 혜택 확대

5-5. 아동의 참여권 보장

6. 노인

6-1. 서론

6-2. 노인의 인권 보장

6-3. 노인학대 방지

7. 병력자

7-1. 서론

7-2. HIV·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보장

7-3. 한센인의 인권보장

7-4. B형 간염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8. 군인(兵)/전·의경

8-1. 서론

8-2. 군인(兵)/전·의경의 인권 보장

- 병사간 주요 금지사항(집합행위, 얼차려 등) 균형법으로 명문화
-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의문사 사건 수사 시 민간 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9. 시설생활인

9-1. 서론

9-2.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10. 성적소수자

10-1. 서론

10-2.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장

10-3.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

- 계간(鷄姦, 남성 간 성교)'이라는 비하적 언어 사용하는 균형법 개정
- 강간 범죄로부터 성전환자 및 동성 간 피해자 보호
-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금지
-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 성별 변경 신청절차 및 결정과정 간소화

11. 새터민

11-1. 서론

11-2. 새터민의 인권 보장

-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새터민 조기정착을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III.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1. 서론

-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받도록 규정 개선

- 영장발부 단계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 기소 전 구금일수 축소
- 반인도 범죄나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합리적 형량기준 마련
- 수형자의 집필권 보장, 서신 검열 원천금지, 의료처우 및 과밀수용 개선
- 구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1-3. 참정권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 위해 알 권리 보장

1-4. 언론·출판의 자유

-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 비공개 정보 범위 축소 및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알 권리 보장

1-5. 정보인권

- 개인 정보 침해 구제를 담당하는 독립적 개인 정보 보호기수 설립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상 내용 심의 권한 제한

1-6. 집회·시위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의 장소, 시간, 방법 등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조정

1-7. 양심·종교의 자유

-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양심의 자유 보장
-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 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채택이나 종교행사 시 학생의 선택권 부여

1-8. 학문·예술의 자유

1-9. 거주·이전의 자유

- 보호관찰제 폐지
- 여권 발부 거부 기준과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준을 보다 명확히 명시

1-10. 생명권

- 사형제 폐지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2-1. 서론

2-2. 사회보장권

2-2-1. 기초생활보장

2-2-2. 4대 사회보험

2-3. 노동권

2-3-1. 집단적 노사관계

-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 및 형사처벌과 인사책임 완화
-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제한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 긴급조정제도 대상의 엄격한 제한

2-3-2. 개별적 노사관계

2-4. 건강권

2-5. 주거권

-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 통제 수단 마련
- 주거대책 없는 강제 철거 및 퇴거 금지
- 재개발 시 철거·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의무화

2-6. 교육권

2-7. 문화권

2-8. 환경권

3. 인권교육 강화

3-1. 서론

3-2. 학교부문인권교육

3-3.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3-4. 시민사회 인권교육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4-1. 서론

4-2.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4-3.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4-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인권 취약 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가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면, ‘소외된’ 인권 영역, 성별, 연령, 학벌·학력 등의 차별로 인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노인, 아동,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침해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사회 전체 계층의 협력적 분위기를 폭넓게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이 권고안에 대해 “국제적 인권 기준과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준비하여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데 이정표가 되는 청사진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진보 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균형 감각이 결여된 내용들이다”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런 평가에는 권고안은 그동안 진보 성향의 학계·정계 및 노동·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이념적인

대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단체와 경제계의 비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선별수용’ 방침을 정했다. NAP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꼭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권고안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인권위원회에 설명해야 한다.

2006년 1월 17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만간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정부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계의 반발이 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18일 “권고안 내용 중 정부가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지, 장기적 과제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모두 시급한 과제들이며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5월 3일 법무부 인권국을 공식 출범시켰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 인권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 등 3개 과로 인권국을 구성하고 과별로 각각 국가 인권정책의 수립·집행·소외 계층의 법률 구조, 인권 침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정부는 인권 NAP의 최종안을 6월말까지 UN에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그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세부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며 연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통보하겠다”는 내용만 UN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5월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6월말까지 NAP 정부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아직 정부의 확정된 NAP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선일보에 의하면 해당 부처들은 ‘국보법 폐지’ 등 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²²⁾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노동부측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이미 정부

22) 조선일보, 2006년 6월 27일자.

에서 수립 중이지만, 비정규직 사용 제한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측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 전체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되기 때문에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NAP권고안에 대한 부처별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인권위의 NAP 권고안	부처 입장
국가보안법 폐지	법무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기존입장 :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은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대책(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	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국방부,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중”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확대	행자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됨. 추진하려면 선거법 등 여러 법률을 고쳐야 하고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집시법 개선	경찰청, “야간 집회는 불허하지만 이외 장소와 방법 제한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하겠음”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기본적으로 거부 입장.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에 쓰여야 함”
학교에서 종교 선택의 자유 보장	교육부, “학생들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함. 올 하반기 중에는 종교 선택뿐 아니라 두발자유화, 체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중”
이주 노동자 자녀 부모와 함께 양육 받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여성부, “모든 이주 노동자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중”
탈북자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가족 관계 법령 정비	통일부, “인센티브의 경우 이미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내용. 가족관계 법령은 현재 국회 계류중”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 공익 사업장의 범위 제한	노동부, “직권중재제도 대신 최소업무제도 도입을 추진 중.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따라 정책을 마련할 것”

각 부처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을 무시한 독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의 입장에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인권위의 이러한 행동이 실제로 인권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며,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권고안은 오히려 사회적인 대립만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권고안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무부의 평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선되어야 할 인권 상황을 권고안에서 장황하게 열거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담은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권 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리의 인권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 국무부가 2006년 3월 8일에 발표한 2005년도 인권보고서와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국무부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강조점도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남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5년도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이 잘 되어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 가정 폭력과 강간, 아동학대, 인신매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보고서가 한국 인권 실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린다.
성폭행	성폭행범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가볍다.
성매매	중국, 동남아 성매매 관광이 성행하고 있다.
인신매매	국제 인신매매의 발생지 겸 중간 기착지이자 종착지이다.
인종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심각하다.
장애인차별	총 노동 인구에서 장애인 비율이 1%도 안된다.
에이즈대책	환자들이 차별과 고립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가 지난 해 전체 결혼의 10%에 이르는 등 국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주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등 소수 인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관례적으로 난민 지위를 잘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퍼져 있다”고 하였다. 중국·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섹스 관광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만 227건의 가정 폭력이 보고되었으며 1,114건이 기소되었다는 한국 법무부의 통계를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의 평가치를 인용해 대략 30%의 한국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강간 피해자조차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보고서는 한국 여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남성의 63%밖에 되지 않고,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기회가 젊은이들에 비해 33.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나이

에 따른 차별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신문법의 신문시장 독과점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는 이 법이 미디어 시장의 문호를 열어 폭넓고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발행인들과 편집인들의 자유와 자율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와 극적 대비를 이룬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권력이 무책임한 지배자들의 손에 집중된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유린 국가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북한·미얀마·이란·짐바브웨·쿠바·벨로루시 6개국과 중국을 예시했다.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국가”이며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해 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더 심한 고립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실종,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감옥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고문은 늘 있는 일로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2005년 9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두발이 잘린 뒤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던 김모(여)씨를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치범 15만~20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돼 있으며 북한 당국이 최근 수용소의 숫자는 수용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일본인 외에 한국인을 비롯하여 다른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납치했으나 일본인 납치 외엔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4,800명을 조사한 결과 23%가 저(低)체중이며, 37%가 영양실조, 7%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이 없다” 2004년도 보고서에서는 6,000명을 조사한 결과 20%가 저체중, 39%가 영양실조였다고 밝혔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실태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행’, ‘성매매’,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에이즈 대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문법과 특히 북한 인권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가운데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에이즈 대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 있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특히 신문법과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쟁점이

된 사안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2) 경제계의 평가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나오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단체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인권위 권고안은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²³⁾고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재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 관련 권고안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필수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와 불법 쟁의 행위 처벌 완화, 비정규직 사유 제한 등은 노동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발상이다”라고 비판하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이어 1월 17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균형 감각이 결여됐다”²⁴⁾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과감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 5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국민 정서에 맞는 사람들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제계의 이러한 비판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문화일보는 “국가정체성을 흔들어난 국가인권위 4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제5단체장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1·9 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아가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계가 사실상 현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한 것은 인권위의 독선과 편향성에 대한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적나라한 비판이다. 재계뿐 아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인권NAP 권고안을 비롯해 인권위의 빗나간 행태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임을 자임하는 인권위가 왜 ‘공공의 적’쯤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인권위 4년의 자취가 그 답이라고 믿는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구현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스스로 그 설립 목적을 어겨온 예가 허다하다.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질서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다.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반대의견 표명은 인권위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의문부터 낳았다. 2004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2006년 1월 10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2006년 1월 17일.

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월권”이라고 반박한 그대로 인권위의 소임을 넘어선 잘못이다. 과거 시행상의 폐단을 이유로 안보형사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또 다른 인권을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005년 12월의 종교적 병역기피 인정 주장 역시 국민의 국방의무를 훼손하면서 입대장병들의 충정까지 모욕하는 편협한 인식일 뿐이다. 이 모두가 국가정체성을 근거에서 흔드는 사안들이다. 인권NAP 권고안은 이런 인권위의 빼놓아진 인권의식의 종합판으로 부를 만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헌정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은 전반에 대한 것과 각론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전반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정부가 일단 유엔에 보고하면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을 밝혀 두는 것이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제인의 도리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경제계는 소수자의 인권보호가 인권위의 기능인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금번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균형 감각이 결여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만일 동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계의 입장 표명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만들어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계의 입장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을 때 사회적 타당성과 이행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진보 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균형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경제계는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회 전반의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발표하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는 너무 가혹할 수가 있다. 1993년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도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요량이라면 편파적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주장만 여과 없이 반영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십 차례에 걸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단지 절차를 이행했다는 면피성 공청회는 무의미하다. 특히 권고안은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지난 2005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도대체 인권위가 동 내용의 입법화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그 전문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권은 안보와 안정적인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시간 제한을 폐지하면 안보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 인권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계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신조나 양심을 구실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유로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하려는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권위는 권고안이 유엔 규약 등 국제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공무원에게 정치헌금 기부 등 제한적 정치활동만 허용하고 있으며 교사의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고, 일본 역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위의 기관’이 아니며,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및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그 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헌법정신과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단에 거스르는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집회와 시위의 장소·시간·방법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토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있다.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현행 규정도 지키지 않아 불법·폭력 시위가 난무하여 경찰의 희생이 속출하고, 희생당한 전·의경의 부모들이 폭력시위를 추방하는 집회까지 열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불법·폭력 시위로 인하여 희생당한 경찰과 부모의 인권보호에 대한 권고안은 왜 없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집회로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집회에 따른 교통마비로 피해 받은 시민의 권리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제는 불법·폭력적인 시위가 국경을 넘어 홍콩에서까지 자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권고안은 무분별한 시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더욱 혼란케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억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발상으로서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하라는 주장은 장기 불법체류와 정주화를 조장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을 허용하면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일정 부분 보호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지하철·전기·가스·병원·통신 등 국가 중추기간산업이 파업으로 중단될 경우에 침해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는 없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에 대한 재계의 반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²⁵⁾

25) 한국경제, 2006년 1월 18일

인권위 권고	쟁점	재계 반박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쟁의 찬반 투표 규정 폐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쟁의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완화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정리하고 실제적 요건 규정	노동권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침해 우려 -기존 파업문화에 비춰 현실성 부족 -긴급조정권은 40년 동안 4차례 발동 -정당한 쟁의 행위는 이미 민형사상 면책이 인정됨 -사법체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정리하고는 일자리 감소 최소화
-고용허용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	비정규직 고용납용방지	-노동시장 현실상 일자리 상실 우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처우 -근로3권 실제 보장을 위한 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기업에 정당치 못한 임금지급 강요 -원청업체는 채용 당사자가 아님 -집단의 힘으로 경제활동 마미 초래
-사회보험제도 의사결정에 비정규직 대표 참여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확대	-기존에 참여하던 근로자단체와 이종의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게 됨 -집단 이기주의의 횡행 우려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완화 -자녀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불법체류자 증가 -내국인 근로권 침해 우려
-채용과정 완료 후 신체검사 -직업 관련성 있는 질병만 사업주에 통보	B형 간염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기존 질환 악화되면 질환 발생과 상관없는 사업장에 피해 발생 우려 -직업관련성 질병 판단기준 모호
-성전환 관련 수술에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	-보험혜택 부여의 우선순위 고려해야
-영장발부 단계에 다양한 석방 조건 마련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증거인멸, 증인에 대한 보복 등 우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일정 범위 확대	참정권	-헌정질서 부인하는 독선적 권고안
-집회 시위 장소 시간 방법 규제 조항 삭제 및 개선	집회 시위의 자유	-헌행 법률이 의사표명 충분히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비판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동아일보는 「‘헌법 상처내기’ 밥 먹듯 하는 국가인권위」라는 사설²⁶⁾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부터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

26) 동아일보 사설, 2006년 1월 11일.

및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비정규직 고용 억제, 사형제 폐지, 집시법 완화 등이 그런 예다. 이들 내용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이고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자 월권(越權)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권고안은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예컨대 쟁의가 발생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금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총은 “정부가 경제현황과 노사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권고안을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고안 내용의 많은 부분은 편파적인 시민단체와 전교조, 전공노 및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다.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법치(法治)를 무시한 채 좌(左)편향 ‘이념코드’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앞세워 자이툰부대 파병에 반대했던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법 테두리 밖의 문제”라며 침묵하는 것도 그래서다.

인권위의 역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초법적(超法的) 발상으로 편향된 코드를 대변하면 국가 정체성의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보편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인권을 보호한단 말인가.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4. 비판적 검토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가운데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온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표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주요 내용

<p>시민·정치적 권리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비공개 정보 범위 축소로 알 권리 보장 · 참정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일정 범위 확대 · 생명권 -사형제 폐지 · 집회, 시위의 자유 -집회 및 시위 장소 시간 방법 등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 종교의 자유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채택이나 종교 행사 시 학생의 선택권 부여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영장발부 단계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반인도 범죄나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p>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제한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직권중재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대상의 엄격한 제한 · 주거권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 및 퇴거 금지 -재개발 시 철거, 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 의무화
<p>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노동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동일가치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및 근로조건의 동일한 처우 보장 · 성적 소수자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금지 -성별 변경 신청절차 및 결정과정 간소화 · 군인 및 전·의경 -병사 간 주요 금지사항(집합행위, 얼치기 등) 균형법으로 명문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의문사 사건 수사 시 민간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1)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 국무부와 달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국보법의 추상적 포괄적 용어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보법 폐지와 함께 국보법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에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전원일치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전 위원장인 김창국 변호사는 2004년 9월 국보법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아직도 최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받아온 반공 교육

때문입니다. 국보법에 걸리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폐가망신하는 상황에서 형성된 레드콤플렉스가 반세기동안 온전해왔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임기 중에 국보법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으로 최근 입장을 밝힌 것”임을 강조했다.²⁷⁾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맞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국가보안법은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법적인 보루”라며 “국가안보를 와해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권고안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온 의제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사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정치참여가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보안법은 사법부나 정치권, 절대다수의 국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적 시민단체인 ‘새사회 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증진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보안법 폐지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실행이 안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법령과 정책 등을 마련할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강정구 교수에 대한 선고는 국가보안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정구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선동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학문의 자유에서 내심의 영역인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만 연구결과를 외적 활동으로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포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에서 내심의 영역인 연구의 자유’와 같은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방어 기재를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만 그 기본권이 그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할 때 그 기본권의 무제한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27) “레드 콤플렉스의 ‘집단 최면’서 벗어나야, 국보법폐지 침묵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직무유기”, 오마이 뉴스, 2004년 9월 10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남용할 때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는 독일 헌법도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강정구 교수 선고 공판의 결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함을 입증한 것이다. 만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 존재와 존립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행위”, “대남 적화혁명론에 동조하는 행위”, “선동적 방법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해방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공산주의·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게 역사적 필연이고, 북한이 민족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남한은 민족 정통성이 없고, 민족통일을 이루려면 주체사상이 길잡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 전쟁은 한 달 내에, 1만 명 미만의 희생자만 내고 끝났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는 1948년 건국돼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존재·존립의 연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제 식민지 지배 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민중의 힘을 조직·동원해 자주적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론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한민국·미국에 대해선 ‘불법성 및 위배’, ‘원수’, ‘전쟁광’, ‘주적’, ‘학살 책임자’ 등으로, 북한은 ‘민족 정통성’ 등으로 표현한다. 이는 학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학문적 논의를 이끌기 위한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없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강교수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강 교수에 대한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다.

(2)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법 절차상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긴급 체포 후 곧바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영장 발부 단계부터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소 전 구금일수를 축소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기관과 구금 시설을 분리토록 제안했다.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의 편차가 심해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약화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은 모두 법원과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추진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하고 반인도 범죄나 국가 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

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할 것도 권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는 참여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사형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월권’이라며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유인태 의원의 발의로 사형제 폐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4)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을 핵심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 설정은 2004년 3월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전원 일치 합헌” 판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등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 권고를 추진해 왔다. 이는 사실상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권고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는 단체나 개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또 허용할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특히 50만 명의 공무원과 40만 명의 교사가 정치에 참여할 경우 정치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서명 운동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학생은 교육과정 중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인권NAP 권고안이 제시한 것은, 현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일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독 우리 사회만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련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투표권자인 공무원과 교사의 참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업무 수행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정치 활동 제한은 인정하지만 담당 업무, 직종과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한 일정 범위 확대’를 인권NAP 권고안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⁸⁾라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듯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일정 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논란의 출발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믿음”은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정치 활동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잘못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전제하고 있듯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박명수는 외국의 사례를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객관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시를 허용한다. 나아가 공직을 보유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정치 허용의 정도가 다르다. 산업 또는 비사무직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폭넓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치 활동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도 전국 차원의 정치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지방 차원의 정치 활동은 소속 부서의 허가를 받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교원은 정치

28) 박명수, 16쪽.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당원으로서 지구당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수업이 끝난 후에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주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공무원에게도 어느 정도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다. 후보 및 정치적 주제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정치 조직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정치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조직이나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교사도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중이 아니라면 타인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으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 사회가 분열과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한 일정 범위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적 행위의 허용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는 그 사회의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의존한다. 상황과 합의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허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존한다. 따라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허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같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마치 허용하지 않는 나라를 제시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황이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의 존재이다.

(5) 집회 시위법 개선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이라는 정책 과제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여러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주요 도로’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집

회·시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조차 사전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법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시민 단체는 “소수 집회참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반 시민이나 경찰의 인권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의미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는 “소수 집회참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일반 시민들이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이를 막는 경찰의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며 집시법 권고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6)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권고도 포함되어 있다.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쉽게 하고, 성전환자 및 동성 사이의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 범죄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은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예를 들어 보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학교선택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학교 측의 종교수업이나 행사를 따르는 것을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종교 교과목이나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8)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2004년 8월 대법원 전원 재판부가 7 대 2로 내린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종교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징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해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대를 거부해 투옥되며, 현재 수감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특정 종교의 신도들로 징역도 거부하고, 병역 대신 형사 처벌을 택하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다. 그러나 유엔국가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종교적 이유

로도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 병역 의무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1969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를 지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개병주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을 표방하여 입대를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양심을 우위에 두는 사람들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자유가 천부 인권의 법이긴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제시하는 것은 대체 복무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국방의무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체 복무이다. 대체 복무는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군복무대신에 일정 기간 공익요원이나 재난구조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1심)에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로지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경우에는 입영·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정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도 병역법 합헌 판결을 결정하였다.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보다 일방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하는 어떤 규범적 표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80개국이며, 법적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대만·이스라엘 등 30여 곳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해 원하지 않는다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 현역보다 3개월 긴 15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종교로 인한 대체 복무만을 허용한다.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은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봉사 기간이 현역의 2배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 국회에서도 대체 복무 법안이 발의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병

의 1.5배인 36개월 동안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떤 내용의 일이 현역과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적정 정도인가가 중요한 의제이다.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지나치게 무거운 대체복무는 가혹성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소수자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군 형법 등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것은 국방부의 정책 변화에 반영되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애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6월 초안이 만들어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006년 4월 4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군 형법 제92조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조항이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4호는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 복무 부적합을 규정한 조항으로 군내의 동성애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은 병영에서 발생하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군에서 동성애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는 병영을 동성애의 사각지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군 기강이 약화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장관이 밝힌 방침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쪽에 코드를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애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군내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동성애의 허용은 군 기강, 전투력의 약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에서 동성애자가 발견되면 강제 전역시킨다. 2004년까지 1만 명이 전역되었다. 현역 군인이 동성과 성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러시아는 동성애자는 입대 금지시키고 있다. 영국은 공개적인 동성애에 대해 행정적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은 1999년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 판결에 대해 유럽 인권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자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수용했다. 프랑스는 동성애자는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고 있다. 독일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동성애자 처리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병영은 남성끼리 생활하는 폐쇄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3년 고참의 성추행을 못 이겨 자살한 병사도 있다고 한다. 군에서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있다.

윤장관의 방침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 5일 국방부는 “병영 내 동성애자의 처리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영 안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성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권 선진국들이 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는 선진국들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인권 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는 전제 위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점에서 인권 후진국인가를 밝혔어야 했을 것이다.

(9)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이 주요 핵심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 보수’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국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인구는 549만 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정한 비정규직 대책에는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로 계약의 서면 작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 보험 적용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권 증진 방안은 노동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쟁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 및 형사 처벌과 민사책임 완화, 직장 폐쇄와 대체근로 제한, 직권 중재 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도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은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끊임없이 요구한 사안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 차별이 심화되고 이것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은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보험

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들을 독립사업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재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될 경우 재계는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쟁의가 발생한 필수공익사업장에 정부가 내리는 직권중재를 폐지하거나 필수공익사업장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항공·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노조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대기업 근로자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동 3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쟁의 행위의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으로 단체행동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직권중재는 지하철·전기·가스·은행·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해 파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5월 직권중재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합헌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 권고는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상당 부분 빼앗는 것이어서 재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통 통신 등 공공분야의 파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도 사라질 수 있다.

또한 500여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그들이 권고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 형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재계는 사활을 걸고 이 권고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4년 말 현재 비정규직의 4대 보험 적용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2004년 기준으로 여성 고용의 비율이 공기업은 20.9%, 민간 기업은 38% 미만으로 매우 낮다며 여성고용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퇴직금과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요청해 영세 사업주의 반발이 우려된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 우려가 있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노동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한 것도 재계와 마찰의 소지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쟁의행위 준칙은 노사자율주의에 입각하여 확립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노동권과 관련된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리하였다. 곧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에 대한 많은 규제 조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재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과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노조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규정은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는 것을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나치게 많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를 권고하였다. 재계는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이 파업으로 중단될 경우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쟁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를 최소업무유지를 전제로 폐지하든지, 국제 노동기구가 권고한 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긴급조정 제도에 대해서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권고안은 정부안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월권이며 균형 잃은 정치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려 마찰을 빚었다.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²⁹⁾

· 정부는 헌법질서에 배치되거나 경제여건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권고안에

2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2006년 1월 17일.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우리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혼란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사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을 내세워 개입해서는 안 될 문제까지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해 4월에는 노사정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인권위가 나서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사정간 대화구도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간 논의가 시작될 시점에 인권위는 또다시 직권중재 폐지, 불법쟁의 형벌 완화, 쟁의대상 범위 확대, 긴급조정 발동 제한 등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권고안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차별시정 업무를 비전문적인 인권위가 모두 맡도록 한 것도 문제다. 고용상 차별에 있어서 직무, 능력, 성과에 따른 차이와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 없이 무조건 인권이라는 잣대로 차별을 규정하고 비현실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독선적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차기 인권위 위원의 재구성시에는 균형된 시각과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만듦이다. 현재 노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의 인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에 있는 실업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정규직근로자가 중소기업 경영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정규직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문제를 인권의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경제적 현상마저도 이념적 영역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인권위와 노동계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반에 달하는 840만 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권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인권 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계는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곧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보다 투명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노동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합의를 보기 힘들다. 조합원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에 반대하고, 아직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여기에 합세하여 노동의 경직성을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정치권도 여기에 굴복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최근에 시도된 청년 실업 해소 정책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 정책으로 제시한 최초고용계약법(CPE)에 학생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년 실업에 맞서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 법의 반대 명분은 무엇인가?

최초고용계약법은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채용할 경우 최초 2년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프랑스식 모델에서 개방 및 경쟁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식 모델로 옮겨가려는 과정에서 나온 진통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학생, 근로자, 좌파가 연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도미니크 드 비팽 총리가 대학생과 노동자를 1회용 휴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동안 영미식 모델을 거부하고 높은 복지모델을 고집해온 프랑스가 만성적인 고실업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노조의 기득권 보호와 이에 따른 경직된 고용제도, 경직된 고용제도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해외 탈출, 저성장이 야기한 일자리 축소와 청년 실업률의 악화(23%)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CPE를 선택했다. 고비용 노동·복지모델을 지속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기업의 청년층 고용이 늘어난다는 경제 원칙을 거부하고 학생들과 노조측은 CPE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청년층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청년들의 해고를 쉽게 했다는 점에서 기성 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측면에서는 경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

경직된 고용 제도는 노조의 압력 때문이다. 노조는 저성장과 청년 실업의 심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연 2%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막혀 23%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청년 실업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경제 원칙에는 무관심하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 시장 유연화에 대한 반대는 이미 취업한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지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0년대 말 사회당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나눠 갖기’ 정책을 도입하여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하였다. 1995년 11%였던 실업률이 10년 지난 지금도 10%를 넘나들고 있다. 의도한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노동 시장의 경직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명하다. 기존의 취업자에게는 완전한 일자리를 보장하지만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이나 실업자에게는 극약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실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은 노동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시고용도 증가시킨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18개월까지의 임시 고용인 비율이 1985년 5%에서 2002년 14%로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일자리가 문제이다. 사회 안전망으로 부족한 일자리가 초래한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 증가가 빈곤층에 대한 자연스런 해결책이다.

아일랜드의 실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는 영미식에 가까운 유연한 고용시장을 갖고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1980년대 이전의 아일랜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18%에 달했고, 극심한 노사분쟁을 겪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영국이나 미국으로 떠났다. 그냥 실업률이 18%에서 5%로 낮아진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1987년부터 노·사·농민 및 비영리단체 대표들이 3년마다 사회대연합을 체결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제 성공 뒤에는 위기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인식과 이에 기초하여 노조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³⁰⁾

프랑스 정부가 노동 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은 자명하다. 강력한 노동조합의 지원 아래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도록 한 노동 관련법규에 대한 반성에서 노동 개혁이 나온 것이다. 뒤늦게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기업 경쟁력의 약화에서 찾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최초고용계약법을 채택하려고 한 것이다. 프랑스가 최근 북유럽이나 영국 등으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한 정책이 최초노동계약법이다.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법과 자유로운 해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위로 끝났다. 학생과 노동계는 연일 강력한 시위를 주도하였고 결국 정치권도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프랑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두고 볼 일이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독일은 나날이 강화되는 국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누려온 높은 삶의 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06년 5월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노조연맹총회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한 ‘전업종 공통 최저임금제’를 거부했다. 나아가 노조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사공동 결정제의 개혁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가 노조 대표들이 요구한 ‘전업종 공통 최저임금제’를 거부한 이유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단일 최저 임금은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의 시행 여부는 인권과 무관한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노동 정책의 결정은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현상이 언급하고 있는 제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인권이 보편적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인권은 지리·지역·경제·사회·정치·종교·이데올로기·성·인종적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의 권리임”³¹⁾을 의미한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공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²⁾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이 표명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1968년 5월 13일 테헤란 선언도 “세계인권

30) 조선일보 2006년 3월 21일자 참고.

31) 엑토르 그로스 에스빠엘,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국제이해교육』, 2004년 4월, p.194.

32) 엑토르 그로스 에스빠엘, 앞의 논문, p.189.

선언은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세계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해를 천명하고 국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고 공표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였다.

엑포르 그로스 에스빠엘은 “인권의 보편성은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합의된 기본 원칙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인류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개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나온 것이며,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자명한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였다.³³⁾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적용 방식”은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지지자들은 인권의 보편성이 ‘합의된 기본 원칙’이며, 그것의 적용은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지자들과 달리 인권의 보편성을 ‘합의된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권이 실행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인구, 국가의 크기, 정치적 힘, 경제적 힘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은 인권의 보편성과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공통된 이해에 대한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에 대해 분명히 지지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보편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제도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인권의 존중과 보호는 결국 개별 국가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합의와 지금이 바로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해야 할 적절한 때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보편적인 인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포함된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정도에 우리 사회가 도달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만 한다.

33) 엑포르 그로스 에스빠엘, 앞의 논문, p.196, 200, 204, 205.

V.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판단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앞세워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나 사람들이 그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나 국회는 보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나 권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단체나 개인은 인권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집단이나 사람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모든 사안들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가?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가? 설사 인권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인권' 개념의 정의(定義)와 사용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이 신장하고 보호해야 할 '인권'의 대상으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³⁴⁾ 또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³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물음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반성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듯이 인권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현실은 중층적이다. 인권 개념의 적용은 복잡한 현실과 만나면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에 적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인권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것을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서에 나타난 인권 조항들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실제로는 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이 만장일치 또는 다수로 결정하여 제시한 것들에 대하여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인

3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3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권 개념 자체가 매우 복잡적이고 중층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정의감을 앞세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정 이념에 편향된 ‘인권근본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 개념을 독점하고, 이념적으로 복잡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합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인권을 실천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개입해야 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극히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자신의 위상에 손상을 입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념 편향성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인권 실천의 현실적 가능성을 스스로 파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한 자신의 원래 목적인 보편적인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헌법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규정해 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헌법을 유린해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대변인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신장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려면 이념적으로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존중하여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 특정 이념에 기울어진 노동과 복지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쉽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권,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넘어서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선언문이다. 그것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개별 국가에게 부과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그 권리가 충족시켜 주어야 할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없다. 설사 개별 국가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의무의 수행은 개별 국가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시행될 수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개별 국가의 정책수립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침이 될 수는 없다. 개별 국가는 사정에 따라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개별 국가의 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인권선언의 내용들은 실

천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제도화하려면 우선 정치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에서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도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운명에 있다. 권고안의 내용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실행은 어렵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에 도달하려면 권고안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당파성이 강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권고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려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쉬운 내용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념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권리의 경우 그것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다. 공산주의는 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구성한 하나의 기획으로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사회적 권리는 오히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한 서구사회에서 성취되었다. 사회적 권리의 실현이 시장 경제에서 이룩한 성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리 실현이 선언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무리한 정책으로 강조할 때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경제 침체의 고통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산성의 향상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풍요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권리 선언은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적인가 친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경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자유주의연대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6년 3월 27일.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2004.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인권장전』, 2004.
- 국가인권위원회법
- 김진, “Ready? Action Nationally!”, 『인권』 2006년 02월호, 국가인권위원회.
- 김혜준, “사례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자유주의연대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6년 3월 27일.
- 마이클 프리먼, 『인권 : 이론과 실천』, 김철효 옮김, 아르케, 2005.
-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옮김, 길, 2005.
- 박병수, “인권 NAP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인권』 2006년 02월호, 국가인권위원회.
- 로버트 사이몬, 노만 보위 지음, 『사회·정치철학』, 이인탁 옮김, 서광사, 1988.
- 엑포르 그로스 에스빠엘,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국제이해교육』, 2004년 4월. 한국유네스코.
- 이명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성찰과 공론의 장 마련”, 『인권』 2005년 5월호.
-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
- 이재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자유주의연대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6년 3월 27일.
- 장경선, “사람이 기본이 되는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 『인권』 2006년 02월호, 국가인권위원회.
- 존즈,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한국유네스코 엮음, 오름. 1995.
- 동아일보, 2005년 12월 19일
- 동아일보, 2006년 3월 10일
- 문화일보, 2006년 1월 10일
- 문화일보, 2006년 1월 17일, 3월 9일
- 조선일보, 2006년 1월 10일
- 조선일보, 2006년 3월 10일
- 중앙일보, 2006년 1월 10일
- 중앙일보, 2006년 4월 5일, 6일
- 한국경제, 2006년 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2006년 9월 29일 1판1쇄 발행

2022년 2월 3일 1판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6년 발행한 NGO시리즈 NO.15 『국가인권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 자유기업원, 2022

비매품